

충남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응용화학과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(안) (공업화학전공)

*제정일 : 2013.03.11

*개정일 : 2014.11.05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바이오응용화학과 공업화학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 자격시험의 방법,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) ① (응시절차)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시험과목)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, 응시과목은 석사학위과정과 학·석사 연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
③ (시험출제기준)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④ 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 출제위원은 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석사학위과정과 학·석사 연계과정은 3인을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인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. 또한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⑤ (합격기준)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⑥ (보고) 학과 주임교수는 합격결과를 계열학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
②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제6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TEPS 476점 이상
2. TOEIC 600점 이상
3. TOEFL(CBT) 163점 이상
4. TOEFL(iBT) 57점 이상
5.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
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학술지에 게재 된 사본 혹은 게재 승인서류(게재 예정 증명서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, 학술지 요건은 각 과정별로, 석사과정의 경우 학진등재(후보)지 1편 이상 혹은 학술발표 2회 이상, 박사과정의 경우 SCI 급 2편 이상(SCI급 논문 1편은 학진등재(후보)지 2편과 동등한 것으로 함) 혹은 학진등재(후보)지 4편 이상(학진 등재(후보)지 1편은 학술발표 2회와 동등한 것으로 함)으로 하며,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에 학술지게재 실적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
③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.

④ 연구분야 특성상 논문보다 특허가 중요시 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면 논

문을 특허로 대신할 수 있다.

-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학기로 석사 6학기, 박사 10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3.03.1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. 단, 제 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2014.11.0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중 제5조(논문지도위원회), 제6조(외국어능력기준), 제 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단, 2008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. (2008~2014학년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SCI 및 SCIE급 논문 1편 이상 또는 학진등재 및 등재후보 국내학술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및 게재승인을 충족하고,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에 학술지게재 실적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
③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한다.

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학술지 인정 범위

(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행지침 발췌)

1. 국제저명학술지 : 논문 게재 연도에 ISI(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)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 색인 중, SCI(Science Citation Index), A&HCI(Arts&Humanities Citation Index), 또는 SSCI(Social Science Citation Index)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.
2. 국제전문학술지(등재) : 논문 게재 연도에 ISI(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)에서 간행하는 학술잡지총목록 ISI Master Journal List에 등재된 학술지 중 국제저명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3. 국제전문학술지(미등재) : 3년 이상의 전문학술지 간행 실적을 가진 국외의 전문학술단체, 학술전문출판사, 대학 또는 연구소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 중 국제전문학술지(등재)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4.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 : 논문 게재 연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를 말한다.
5. 국내전문학술지(등재후보) : 논문 게재 연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를 말한다.
6. 국내전문학술지(미등재) : 3년 이상의 전문학술지 간행 실적을 가진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단체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로서, 국내전문학술지(등재 또는 등재후보)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7. 기타학술지 : 학술단체, 국내·외 대학(학과 및 부설기관 포함), 연구소, 재단, 기관, 또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, 학술논문만을 게재하고 소정의 심사과 수정을 거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학술지게재 실적표

[공업화학전공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]

작성일 : 20 년 월 일

작성자 :

1.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

성명		박사과정기간	20 . . . ~ 20 . . . (년 개월)		
청구논문제목					
지도교수		전공분야			
현직장명					
부서		직위		전화번호	

2. 논문발표실적

구 분		논 문 명	저널명/ 발표기관	년월	저자명 (순서)	주저자/교신 저자 여부
논문지 게재	국외					
	국내					

붙임 : 증빙자료 각 1부.